

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연금 수급 권자	성명		생년월일
	자택 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[]에 []아니요
	주소		
	연금 종류 [] 퇴역연금 [] 퇴역유족연금		
	연금번호		상실일
	상실 사유 []사망 []재혼 []친족관계 종료 []연금 수급권자 25세 도달 []연금 수급권자 장해 해소		
	신고인	성명	
자택 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[]에 []아니요
주소			
연금 수급권자와의 관계			

「군인연금법 시행령」 제33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

첨부서류	연금수급권의 상실 사유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.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: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.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의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1부 3. 연금 수급권자가 25세에 도달한 경우: 없음 4. 연금 수급권자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